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

■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66호)

2026.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개정안의 입법배경	6
가. 현 황	6
나. 입법영향분석 의의 및 논의 경과	7
다. 국내·외 입법영향분석 운영 사례	9
3. 검토의견	13
가. 개정의 필요성	13
나. 조문별 검토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주영 · 김예지 · 천하람 · 이준석 · 강대식 · 조정훈 ·

최수진 · 김선민 · 박준태 · 유용원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6. 4. 7.

3. 회 부 일 : 2026. 4. 8.

※ 의안번호 : 18166

II. 제안이유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입법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 이후의 입법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입법에 대한 평가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상황임.

한편, 국회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 임기 내에 의결되어 시행되더라도 해당 법률이 사회에 정착해 법률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기에는 이미 발의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해당 의안의 입안자는 이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이 발의한 법률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하여 입법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도의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발의자가 자신의 의지로 사후입법평가의 실시 여부를 부칙 등 법률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입법결과환류를 위한 국회의원의 노력 및 국회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168조 및 제169조).

나. 법률안 발의 시 입법결과 환류를 위한 사후입법평가 시행 기한을
발의 의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0조).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의원이 자신이 발의하여 공포·시행된 법률의 결과를 점검·분석하여 향후 입법과정에 원활히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입법결과 환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의원은 법률안 발의 시 사후입법평가 기한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중인 소관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실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국회의장이 사후입법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결과의 점검·분석 및 환류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장 입법결과의 환류</u>
<u><신 설></u>	<u>제168조(입법결과의 환류 노력) 의원은 자신이 발의하여 공포·시행된 법률안의 사회적 영향 및 시행 효과 등의 결과(이하 “입법결과”라 한다)를 점검·분석하여 입법결과가 원활히 환류(還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69조(국회의 책무)국회는 입법결과의 환류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신 설> 제16장 보칙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생략) 제169조(규칙 제정) (생략)	제170조(사후입법평가의 시행) ① 의원은 입법결과의 환류를 위해, 법률안을 발의할 때 해당 법률안의 입법결과를 사후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평가(이하 “사후입법평가”라 한다)할 기한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소관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의 실시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실시의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후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후입법평가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장 보칙 제171조(기간의 기산일) (현행 제168조와 같음) 제172조(규칙 제정) (현행 제169조와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사후입법평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후입법평가 실시
---	---

2. 개정안의 입법배경

가. 현 황

국회의 법률안 접수 및 처리(임기만료폐기 제외)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제14대 국회에서 90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고 763건이 처리된 이후 매 입법기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25,858건이 접수되고 이 중 9,474건이 처리되는 등 입법량이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에 따라,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서도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 입법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표-2] 입법기별 법률안 접수 및 처리 건수

(2026. 5. 20. 기준, 단위: 건)

입법기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접수건수	902	1,951	2,507	7,489	13,913	17,822	24,141	25,858	18,526
처리건수	763	1,561	1,751	1,913	7,612	8,010	9,139	9,474	5,395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2025.3. 참조

현행법상 국회 입법절차는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단계에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등 사전적 입법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이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법률의 개정·보완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나. 입법영향분석 의의 및 논의 경과

‘입법영향분석¹⁾’은 법률이 사회·경제·행정·기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입법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음.

‘입법영향분석’은 실시 시점에 따라 사전적·사후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²⁾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 장래 발생할 입법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미리 예측·검토하는 것이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법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입법효과와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간 국회에서도 ‘입법영향분석’ 또는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그 논의는 주로 법률안 발의 전 또는 심사 단계에서 입법의 효과를 미리 분석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에 집중되어 왔음.

구체적으로, 제19대 국회 3건 및 제20대 국회 4건 등 총 7건(국회의장 의견제시 1건 포함)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 3건은 사후분석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대체로 사전분석 중심의 제도 설계가 논의되었으며, 제21대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의견제시를 포함하여 총 7건³⁾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사전분석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음.

1) 입법의 효과와 영향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에서는 ‘입법평가’, ‘입법영향평가’, ‘입법영향분석’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현행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영향분석’으로 지칭하되, 개정안은 법률 시행 이후의 평가 절차를 ‘사후입법평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명은 개정안의 문언에 따라 ‘사후입법평가’로 기술함.

2) 그 밖에 ‘병행분석’으로도 구분 가능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법률 시행 전 분석인 ‘사전분석’에 포함하여 기술함.

3)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위해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하나의 제도 도입안으로 보아 1건으로 산정함.

[표-3] 입법영향분석 도입 관련 법률안 (제19대~제21대 국회)

구 분		의안번호	분석내용	분석시기
제19대 국회	조사처법 개정안 (유기준의원안)	제4857호	입법영향분석	불분명
	국회법 개정안 (이한구의원안)	제6793호	규제영향평가	사전분석
	조사처법 개정안 (민현주의원안)	제14988호	입법영향분석	사전·사후분석
제20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김종석의원안)	제1763호	규제영향분석	사전분석
	국회법 개정안 (지상욱의원안)	제3818호	규제영향분석	사전분석
	조사처법 개정안 (백재현의원안)	제15802호	입법영향분석	사전·사후분석
	국회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입법영향분석	사전·사후분석
제21대 국회	국회법·조사처법 개정안 (김태년의원안)	제1888호 제1891호	입법영향분석	사전분석
	국회법·조사처법 개정안 (정경희의원안)	제2137호 제2139호	규제영향분석	사전분석
	국회법 개정안 (이종배의원안)	제3012호	규제영향분석	사전분석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 (윤재욱의원안)	제19039호 제19040호	규제입법영향분석	사전분석
	국회법 개정안 (신정훈의원안)	제19778호	규제영향평가	사전분석
	국회법 개정안 (홍석준의원안)	제22187호	규제영향분석	사전분석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장)	의견제시	입법영향분석	사전분석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사전 입법영향분석’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전분석은 법률 시행 전 장래의 효과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나타난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법률안 발의 단계에서 일정한 분석 절차를 요구할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제도 도입에는 이르지 못하였음.⁴⁾

4) 당시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3차례 심사(2023.4.6., 2023.7.21., 2023.8.23.) 하였는데, 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법률안이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해 보면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② 법률안 발의 단계에서의 입법영향분석 의무화는 의원 입법권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므로 기존 입법절차의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음.

다. 국내·외 입법영향분석 운영 사례

‘입법영향분석’ 관련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였음.⁵⁾

이는 ‘현행 법령’ 및 ‘공통 제도’를 대상으로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⁶⁾ 개정안에 따른 ‘사후입법평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에 해당함.

정부의 ‘입법영향분석’은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었는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분석 결과의 활용까지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5) 「행정기본법」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현행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법제처장은 제6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법제처 홈페이지 - 법제업무정보 - 행정법제 혁신 - 입법영향분석(최종 검색일 : 2026. 6. 14.),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50000>>

구체적으로,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현행 법령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분석대상을 확정된 후,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함.

이후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에 활용할 수 있음.

[그림-1] 정부의 입법영향분석 절차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정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2022년 2건을 시작으로 매년 입법영향분석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11건의 입법영향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됨.

[표-4] 최근 4년간 정부의 입법영향분석 수행 현황

구 분	분석 대상	수행기관	수행기간
2022년 (2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6개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6개월
2023년 (3건)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7개월
	위생용품 관리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6개월
	장애인 등록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개월
2024년 (3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7개월
	민간자격증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7개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개월
2025년 (3건)	청소년 보호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7개월
	폐교재산 활용 제도	한국행정연구원	6개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한국개발연구원	8개월

출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입법계획 또는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대안을 검토하는 사전 분석과, 법률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법률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는 사후 분석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⁷⁾

우선, 미국은 행정부 규제에 관하여 정교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안의 비용·효과를 검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에 공식 의견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정책합치성 및 재정영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는 법률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법안심사를 지원하고 있음.

영국은 규제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새로운 규제 또는 정책을 제안할 때 원칙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가 정부의 규제영향평가의 질을 심사함으로써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에 대해서는 ‘집행 후 재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 규제개선, 폐지 또는 단순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7) 권수진,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2026. 3., pp.62-70;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정에서 입법 영향분석이 갖는 법적 위상과 과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보고서(2023. 12.), pp.36-41

독일은 입법영향분석을 ‘사전평가’, ‘병행평가’, ‘사후평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평가’에서 도출된 가설과 예측이 ‘병행평가’ 및 ‘사후평가’를 거쳐 검증·수정되고, 그 결과를 다시 새 입법의 ‘사전평가’에 환류하는 순환적 평가체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스위스는 입법에 대한 사후적·지속적 평가를 헌법적 책무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입법·정책 형성 단계의 ‘간이 사전분석’과 법률 시행 이후의 ‘본격 사후평가’를 연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프랑스는 헌법개정안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한 정부제출 법률안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발의자와 영향분석 작성자가 ‘정부’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EU는 2000년대 초부터 통합적 영향평가(integrated impact assessment) 제도를 발전시켜 왔는데, 유럽위원회는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유럽의회조사처(EPRS)가 요약·평가 또는 보완적 분석을 통해 다시 의회에 제공하고 있음.

또한, 사후평가 결과가 충분한 경우 사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사전·사후평가를 연계한 순환적·차등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표-5] 해외 주요국 입법영향분석 운영 방식

구 분	사전 분석	사후 분석	수행기관
미국	규제영향분석	-	관계 행정기관/정부책임처
영국	규제영향평가		정부/규제정책위원회
독일	입법영향분석		정부/의회/연구기관 등
스위스	간이 사전분석	본격 사후평가	정부/의회/연구기관 등
프랑스	입법영향분석	-	법안발의자(정부)
EU	영향평가		유럽위원회/유럽의회조사처

출처: 권수진, 「입법영향분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2026. 3., pp.62-70 참조하여 재구성

8) 「스위스연방 헌법」 제170조(효율성의 평가) 연방의회는 연방이 취한 조치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되도록 한다.

3. 검토의견

가. 개정의 필요성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 입법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후입법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국회의 입법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실제 정책효과, 사회적 영향 및 부작용 등을 분석함으로써, 법률안 처리 건수 중심의 입법활동에서 벗어나 입법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입법문화를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객관적 자료와 분석 결과가 축적될 경우 향후 유사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근거 기반의 입법심사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둘째, 국회의 입법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법률의 제·개정 이후에도 국회가 해당 법률의 시행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행사가 법률의 의결에 따라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점검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입법 결과에 대한 제도적 책임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최근 법률안 제출 및 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입법 내용 역시 복잡·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법률 시행 이후 문제점을 확인하는 ‘사후입법평가’만으로는 입법품질 관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한편,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입법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 기본권 제한 가능성, 행정상 집행 가능성, 재정 부담 및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부실입법이나 과잉입법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논의가 있음.⁹⁾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사전 입법영향분석(또는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려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5건이 계류 중에 있음.

[표-7] 사전 입법영향분석(규제영향분석) 관련 계류 법률안 현황

구 분	의안번호	명 칭	분석범위
국회법 개정안 (윤재옥의원안)	제1696호	입법영향분석	· 대상: 국민 권리제한·의무부과 법률안 · 시기: 발의 전 또는 위원회 심사 전
국회법 개정안 (박성준의원안)	제2611호		· 대상: 국민 권리제한·의무부과 법률안 · 시기: 위원회 심사 전
국회법·조사처법 개정안(부승찬의원안)	제2691호 제2692호		· 대상: 제한 없음 · 시기: 위원회 심사 종료 이전
국회법 개정안 (김소희의원안)	제15354호	규제영향분석	· 대상: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 시기: 발의 전 또는 위원회 심사 전

9) 참고로, 「국회법」에 따라 전문위원이 수행하는 검토보고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입법취지, 주요 쟁점, 예상되는 정책효과 및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검토보고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보조자료로서, 제한된 심사기간 내에 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조문별 검토

1) 입법결과의 환류 노력 등 (안 제168조·제169조)

안 제168조는 ‘의원은 자신이 발의하여 공포·시행된 법률안의 입법 결과를 점검·분석하여 입법결과가 원활히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의원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입법결과 환류 노력’이라는 기본적 책무를 법률상 자율적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입법결과의 환류 노력을 ‘국회’가 아닌 ‘의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우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을 특정 발의자의 입법 결과로 보기보다는 국회의 입법행위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¹⁰⁾

또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는 위원회 대안, 수정안 등을 통해 당초 발의자의 제안 취지나 조문 내용과 최종적으로 공포·시행되는 법률의 취지·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최종 법률의 시행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점검·분석 책임을 최초 발의 의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책임 주체와 평가 대상 사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¹¹⁾

10) 또한,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법률 시행 이후 임기만료, 사직 등으로 더 이상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입법결과 환류 노력을 기대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11) 나아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결과 환류 노력의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안 제169조는 입법결과의 환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관한 책무를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입법결과의 점검·분석은 여러 조직적·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환류 노력 역시 개별 의원보다는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보임.

2) 사후입법평가의 시행 (안 제170조)

첫째, 안 제170조제1항은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기한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발의 의원이 법률안의 내용, 정책목표 및 입법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후입법평가의 실시 여부와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결과 환류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사후입법평가 기한의 규정 여부를 전적으로 발의 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경우 법률안의 중요도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평가 대상 선정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²⁾

둘째, 안 제170조제2항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사후입법평가 실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12) 아울러, 법률안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안과 병합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거나, 수정안 의결 등을 통해 당초 발의안의 취지·내용과 상당 부분 달라지는 경우에도 당초 발의안에 포함된 사후입법평가 기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가중 정족수를 요구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일시적 다수에 의한 제도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상임위원회별 운영 기준이나 제도 활용의 적극성에 따라 평가 대상 선정 및 운영 방식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입법평가 대상 선정 기준, 평가 필요성 판단 요소 등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별 운영 편차를 완화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안 제170조제3항은 국회의장이 의원이 사후입법평가 기한을 규정한 법률안과 상임위원회가 사후입법평가 실시를 의결한 소관 법률에 대하여 사후입법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소속기관이 그 평가 결과를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입법평가의 체계적인 실시와 평가 결과의 상임위원회 환류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의원이 사후입법평가 기한을 규정한 모든 법률안과 상임위원회가 실시를 의결한 모든 소관 법률을 일률적으로 사후입법평가 대상으로 할 경우, 평가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행정적·분석적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개별 평가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와 실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사후입법평가의 ‘실시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후 후속 입법조치나 제도개선에 연계하기 위한 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류’를 위한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6